|  |  |  |
| --- | --- | --- |
| **북경 등 8개 성시(省市), 영업세의** **증치세 전환 시범관련 세수징수** **관리문제에 대한 공고**국가세무총국공고 2012년 제42호《북경 등 8개 성과 도시의 교통운송업 및 일부 현대서비스업에 대한 영업세를 증치세로 대체하는 시범 전개에 대한 통지》(재세[2012]71호) 정신을 관철 실행하고, 개혁 시범의 순조로운 시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현재 세수징수관리 관련 문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1. 시범지역의 세금계산서 사용문제(1) 본 지역 시범 실시일로부터, 시범지역 증치세 일반납세인(이하 ‘일반납세인’)이 증치세 과세대상 행위(화물운송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를 영위하는 경우 증치세전용 세금계산서(이하 ‘전용세금계산서’) 및 증치세 보통세금계산서를 통일적으로 사용해야 하고, 일반납세인이 화물운송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화물운송업 증치세전용 세금계산서(이하 ‘화물운송전용 세금계산서’) 및 보통 세금계산서를 일괄적으로 사용해야 한다.소규모납세인이 화물운송서비스를 제공하고, 접수측이 화물운송전용 세금계산서를 청구한 경우, 주관세무기관에 대하여 화물운송전용 세금계산서를 대리발급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화물운송전용 세금계산서를 대리 발급한 경우 전용세금계산서 대리발급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해야 한다.(2) 본 지역 시범 실시일로부터, 시범지역 납세인은 도로, 내륙하천 화물운송업 통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서는 아니 된다.(3) 시범지역에서 항구부두서비스, 화물운송/여객운송 지점 서비스, 하역운송서비스 및 여객운송서비스를 제공하는 일반납세인은 정액보통세금계산서를 사용할 수 있다.(4) 시범지역에서 국제화물운송 대리업무를 영위하는 일반납세인은 반드시 6련(역주: 6장이 함께 붙어있는) 증치세전용 세금계산서 또는 5련(역주: 5장이 함께 붙어있는) 증치세 보통세금계산서를 사용해야 하고, 그 중 네 번째 장은 외화매입 송금페이지로 해야 한다. 국제화물운송 대리업무를 영위한 소규모납세인이 발급한 보통세금계산서 네 번째 장은 외화매입송금 페이지로 해야 한다.(5) 납세인이 본 지역 시범 실시일 전에 증치세로 대체한 영업세 과세대상서비스를 제공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만약 서비스 정지, 할인, 계산서발급 오류 등이 발생하고, 세금계산서 폐기조건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 마이너스(-) 전용세금계산서 및 마이너스(-) 화물운송전용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으며, 반드시 마이너스(-) 보통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세금계산서를 새로 발급하는 경우, 보통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고, 전용세금계산서 및 화물운송전용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2. 세금통제시스템 사용문제(1) 본 지역 시범 실시일로부터, 시범지역의 새로 인증된 일반납세인(화물운송서비스를 제공한 납세인은 제외)은 증치세 위조방지 세금통제시스템을 사용해야 하고, 화물운송서비스를 제공한 일반납세인은 화물운송업 영업세를 증치세로 대체하는 시범 세금통제시스템을 사용해야 한다. 시범지역에서 사용하는 증치세 위조방지 세금통제시스템 전용설비는 금세디스크(金税盘) 및 세금신고 디스크(报税盘)이다. 납세인은 금세디스크를 사용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며, 세금신고디스크를 사용하여 세금계산서를 수령구매하고, 초세(IC카드코딩)/세금신고를 진행해야 한다. 화물운송업 증치세전용 세금계산서 세금통제시스템 전용설비는 세금통제 디스크(税控盘) 및 세금신고 디스크(报税盘)이다. 납세인은 세금통제 디스크를 사용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세금신고 디스크를 사용하여 세금계산서를 수령구매하거나, 초세(IC카드코딩)/세금신고를 진행해야 한다.(2) 화물운송업 증치세전용 세금계산서 세금통제시스템 및 전용설비관리는 현행 증치세위조방지시스템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해야 하고, 관련 되는 문서 시범지역은 기존 문서 기초 위에 적당하게 조정할 수 있다.(3) 시범 실시일로부터, 북경시 소규모납세인은 금세디스크 또는 세금통제디스크를 사용하여 보통세금계산서를 사용할 수 있고, 세금신고디스크를 사용하여 세금계산서를 수령구매하거나, 초세(IC카드코딩)/세금신고를 진행할 수 있다.3. 화물운송 전용세금계산서 발급문제(1) 일반납세인이 과세대상화물운송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화물운송전용세금계산서를 사용해야 하고, 기타 과세대상항목, 면세항목 또는 비증치세 과세대상항목을 제공한 경우 화물운송전용세금계산서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2) 화물운송전용세금계산서 중 “운송업자 및 납세인 식별번호” 란 내용은 화물운송서비스를 제공하고, 화물운송전용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일반납세인 정보여야 한다: “실제 계산서 수령측 및 납세인 식별번호”란 내용은 운송비용을 실제적으로 부담하고,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일반납세인 정보여야 한다:“비용항목 및 금액”란 내용은 과세대상화물 운송서비스명세항목의 증치세를 포함하지 않은 판매액이다: “합계금액”란 내용은 과세대상화물 운송서비스항목의 증치세액을 포함하지 않은 판매액의 합계이다: “세율”란 내용은 증치세 세율이다: “세액”란은 과세대상화물 운송서비스항목의 증치세액을 포함하지 않고 판매액 및 증치세세율에 따라 계산한 증치세액이다: “세금포함가격(갖은자)(소문자)”란 내용은 증치세액을 포함하지 않은 판매액 및 증치세액의 합계이다: “기계일련번호” 내용은 화물운송업 증치세전용 세금계산서 세금통제 시스템 세금통제 디스크 일련번호이다.(3) 세무기관이 화물운송전용세금계산서를 대리발급하는 경우, 화물운송업 증치세전용 세금계산서 세금통제시스템은 화물운송전용세금계산서 왼쪽 귀퉁이에 “대리발급”이라는 자구(字样)를 자동적으로 인쇄해야 하고; 화물운송전용세금계산서 “비용항목 및 금액”란 내용은 과세대상화물 운송서비스명세항목의 증치세액을 포함한 판매액이어야 한다: “합계금액”란 및 “세금포함가격(갖은자)(소문자)”란 내용은 과세대상화물 운송서비스항목의 증치세액을 포함한 판매액 합계여야 한다:“세율”란 및 “세액”란은 모두 자동적으로 “\*\*\*”을 인쇄한다: “비고”란은 세금완납증명서 번호를 인쇄한다.(4) 일반납세인이 화물운송서비스를 제공하고, 화물운송전용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과세대상서비스 정지, 할인, 계산서발급오류 및 세금계산서 공제페이지, 계산서페이지를 인증할 수 없는 등 정황이 있고, 또한 세금계산서 폐기조건에 부합되지 않아 반드시 마이너스(-) 화물운송전용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경우, 실제 계산서수령측 또는 운송업자는 반드시 주관세무기관에 《마이너스(-)화물운송업 증치세전용 세금계산서 발급 신청서》(첨부문서 1)를 기입하여 보고해야 하며, 주관세무기관의 심사를 거친 후, 《마이너스(-) 화물운송업 증치세전용 세금계산서 발급 통지서》(첨부문서 2, 이하 《통지서》로 약칭함)를 발급해야 한다. 운송측은 《통지서》에 근거하여 화물운송업 증치세전용 세금계산서 세금통제시스템 중에 매출마이너스(-)로 마이너스(-) 화물운송전용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통지서》는 잠정적으로 시스템을 통하여 발급 및 관리하지 아니 하고, 기타 사항은 현행 마이너스(-)전용세금계산서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해야 한다.4. 화물운송 전용세금계산서 관리문제 (1) 화물운송전용세금계산서는 잠정적으로 비정상 세금계산서(失控发票) 신속보고메커니즘에 포함시켜 관리하지 아니 한다.(2) 화물운송전용세금계산서의 인증결과, 심사결과 분류는 잠정적으로 도로, 내륙하천화물 운송업 통일세금계산서와 일치해야 하고, 인증 심사 이상 화물운송전용세금계산서의 처리는 잠정적으로 현행 도로, 내륙하천 화물운송업 통일세금계산서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해야 한다.(3) 심사이상 화물운송전용세금계산서의 심사검사는 잠정적으로 현행 도로, 내륙하천화물 운송업 통일세금계산서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해야 한다.본 공고에서 말하는 시범실시일은 재세[2012]71호 문건이 규정한 신구세제 전환완성일을 가리킨다.특별히 이를 공고한다.첨부문서: 1. 마이너스(-) 화물운송업 증치세전용 세금계산서 발급 신청서. 　 2. 마이너스(-) 화물운송업 증치세전용 세금계산서 발급 통지서.국가세무총국 2012년 8월 24일 |  | **关于北京等8省市营业税改征****增值税试点有关税收征收管理****问题的公告**国家税务总局公告2012年第42号为了认真贯彻落实《财政部 国家税务总局关于在北京等8省市开展交通运输业和部分现代服务业营业税改征增值税试点的通知》（财税[2012]71号）精神，保障改革试点的顺利实施，现将税收征收管理有关问题公告如下： 　 一、关于试点地区发票使用问题 　 （一）自本地区试点实施之日起，试点地区增值税一般纳税人（以下简称一般纳税人）从事增值税应税行为（提供货物运输服务除外）统一使用增值税专用发票（以下简称专用发票）和增值税普通发票，一般纳税人提供货物运输服务统一使用货物运输业增值税专用发票（以下简称货运专用发票）和普通发票。 　 小规模纳税人提供货物运输服务，接受方索取货运专用发票的，可向主管税务机关申请代开货运专用发票。代开货运专用发票按照代开专用发票的有关规定执行。 　 （二）自本地区试点实施之日起，试点地区纳税人不得开具公路、内河货物运输业统一发票。 　 （三）试点地区提供港口码头服务、货运客运场站服务、装卸搬运服务以及旅客运输服务的一般纳税人可以选择使用定额普通发票。 　 （四）试点地区从事国际货物运输代理业务的一般纳税人，应使用六联增值税专用发票或五联增值税普通发票，其中第四联用作购付汇联；从事国际货物运输代理业务的小规模纳税人开具的普通发票第四联用作购付汇联。（五） 纳税人于本地区试点实施之日前提供改征增值税的营业税应税服务并开具发票后，如发生服务中止、折让、开票有误等，且不符合发票作废条件的，应开具红字普通发票，不得开具红字专用发票和红字货运专用发票。对于需重新开具发票的，应开具普通发票，不得开具专用发票和货运专用发票。 　 二、关于税控系统使用问题 　 （一）自本地区试点实施之日起，试点地区新认定的一般纳税人（提供货物运输服务的纳税人除外）使用增值税防伪税控系统，提供货物运输服务的一般纳税人使用货物运输业增值税专用发票税控系统。试点地区使用的增值税防伪税控系统专用设备为金税盘和报税盘，纳税人应当使用金税盘开具发票，使用报税盘领购发票、抄报税。货物运输业增值税专用发票税控系统专用设备为税控盘和报税盘，纳税人应当使用税控盘开具发票，使用报税盘领购发票、抄报税。 　 （二）货物运输业增值税专用发票税控系统及专用设备管理按照现行增值税防伪税控系统有关规定执行，涉及的相关文书试点地区可在现有文书基础上适当调整。（三）自试点实施之日起，北京市小规模纳税人可使用金税盘或税控盘开具普通发票，使用报税盘领购发票、抄报税。 　 三、关于货运专用发票开具问题 　 （一）一般纳税人提供应税货物运输服务使用货运专用发票，提供其他应税项目、免税项目或非增值税应税项目不得使用货运专用发票。 　 （二）货运专用发票中“承运人及纳税人识别号”栏内容为提供货物运输服务、开具货运专用发票的一般纳税人信息；“实际受票方及纳税人识别号”栏内容为实际负担运输费用、抵扣进项税额的一般纳税人信息；“费用项目及金额”栏内容为应税货物运输服务明细项目不含增值税额的销售额；“合计金额”栏内容为应税货物运输服务项目不含增值税额的销售额合计；“税率”栏内容为增值税税率；“税额”栏为按照应税货物运输服务项目不含增值税额的销售额和增值税税率计算的增值税额；“价税合计（大写）（小写）”栏内容为不含增值税额的销售额和增值税额的合计；“机器编号”栏内容为货物运输业增值税专用发票税控系统税控盘编号。 　 （三）税务机关在代开货运专用发票时，货物运输业增值税专用发票税控系统在货运专用发票左上角自动打印“代开”字样；货运专用发票“费用项目及金额”栏内容为应税货物运输服务明细项目含增值税额的销售额；“合计金额”栏和“价税合计（大写）（小写）”栏内容为应税货物运输服务项目含增值税额的销售额合计；“税率”栏和“税额”栏均自动打印“\*\*\*”；“备注”栏打印税收完税凭证号码。（四）一般纳税人提供货物运输服务，开具货运专用发票后，发生应税服务中止、折让、开票有误以及发票抵扣联、发票联均无法认证等情形，且不符合发票作废条件，需要开具红字货运专用发票的，实际受票方或承运人应向主管税务机关填报《开具红字货物运输业增值税专用发票申请单》（附件1），经主管税务机关审核后，出具《开具红字货物运输业增值税专用发票通知单》（附件2，以下简称《通知单》）。承运方凭《通知单》在货物运输业增值税专用发票税控系统中以销项负数开具红字货运专用发票。《通知单》暂不通过系统开具和管理，其他事项按照现行红字专用发票有关规定执行。 　 四、关于货运专用发票管理问题 　 （一）货运专用发票暂不纳入失控发票快速反应机制管理。 　 （二）货运专用发票的认证结果、稽核结果分类暂与公路、内河货物运输业统一发票一致，认证、稽核异常货运专用发票的处理暂按照现行公路、内河货物运输业统一发票的有关规定执行。（三）对稽核异常货运专用发票的审核检查暂按照现行公路、内河货物运输业统一发票的有关规定执行。本公告所称试点实施之日是指财税[2012]71号文件规定的完成新旧税制转换之日。 　 特此公告。 　　附件：1.开具红字货物运输业增值税专用发票申请单.DOC 　　 2.开具红字货物运输业增值税专用发票通知单.DOC 　　国家税务总局 　　二○一二年八月二十四日 |